

한국주택금융공사 특정직(주택연금상담) 및 계약직(사무출납) 채용공고

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
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2년 4월 25일

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

- ◆ 모집분야별 · 지원부점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
- ※ 중복지원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- 특정직(주택연금상담) 2명 및 계약직(사무출납) 2명 채용

구분	모집분야 (직군)	담당업무	운영부점	채용 인원
특정직 (무기계약직)	주택 연금상담 (상담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택연금 유선 안내 및 상담 ■ 주택연금 신청 접수, 담보주택 조사 ■ 주택연금 약정 등을 위한 자서업무 등 	경기중부지사	1명
			인천지사	1명
계약직 (휴직대체)	사무출납 (사무관리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점 배정 예산 운영, 지급결의서 작성 및 관리, 업무용 부동산 관리 등 	본사	1명
			인천지사	1명

※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점(타 지역)으로 이동할 수 있음

- 운영부점 소재지(공고일 기준)

운영부점	주소
본사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부산국제금융센터(문현동)
경기중부지사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, 송백빌딩 8층
인천지사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60(부평동) 현대해상 부평사옥 9층

2. 지원자격

- 연령, 학력, 성별 등 제한은 없으나, 공사 정년을 고려하여 특정직(주택연금상담)은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*
*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(5.9. 18:00시) 기준
- 근무 예정지(운영부점)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(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)
- 「채용세칙」 제16조(채용금지자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※ 「채용세칙」 제16조(채용금지자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
11. 「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「채용세칙」 제23조(합격의 취소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.

1.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
2. 채용비리 연루자
3.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
4.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(제출서류)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

3. 채용조건

- 고용형태
 - 주택연금상담 : 특정직(무기계약직, 정년인 만 65세까지 근무 가능)
 - 서무출납 : 계약직(기간제 근로자)

- 계약기간 : 채용일(6월중) ~ 22.12.31.(약 7개월)*

*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휴직자 복직 시 까지 재계약 가능(단, 정규직 전환 불가)

□ 근무시간 : 09:00 ~ 18:00(주5일)

□ 보수수준(세전)

- 주택연금상담 : 기본연봉 24,000천원(실적급 및 법정수당 등 별도)
- 사무출납 : 월정액급여 2,050천원

4. 지원서 접수

□ 접수기간 : 2022.4.25(월) ~ 5.9(월) 18:00(오후 6시)

- 마감시간(5.9(월) 18:00)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날까지 제출
- ‘임시저장’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‘최종제출’ 처리

□ (입사지원서)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

□ (접수방법) 채용홈페이지(<https://hftop.saramin.co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※ 개별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

5. 전형 절차 및 일정 [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]

□ 전형 절차

	① 채용공고	② 서류전형	③ 면접전형	④ 선발
특정직 ¹⁾ (주택연금상담)	입사지원서 접수 4.25.(월) ~ 5.9.(월) 18:00	5.16.(월) ~ 5.20(금) 5배수 선발	6.3.(금) 1배수 선발	입사예정일 ²⁾ 7월 초 또는 10월 초
계약직 ¹⁾ (휴직대체)	입사지원서 접수 4.25.(월) ~ 5.9.(월) 18:00	5.16.(월) ~ 5.20(금) 5배수 선발	6.3.(금) 1배수 선발	입사예정일 6월 중

주: 1) 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2) 기존 특정직 정년퇴직시점을 감안하여 7월 초(경기중부지사) 또는 10월 초(인천지사) 입사

□ 전형 일정

구 분	일 정
■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	4.25.(월) ~ 5.9.(월)
■ 서류전형	5.16.(월) ~ 5.20.(금)
■ 면접전형	6.3.(금) <u>(서울에서 실시)</u>
■ 입사예정일	
- 특정직(주택연금상담)	경기중부지사 : 22년 7월 초 인천지사 : 22년 10월 초
- 계약직(서무출납)	6월 중

※ 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6. 우대사항

※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**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(우대사항에 체크)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**

※ 전형 단계별 **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(부적격자)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, 우대사항 중복 시 가점은 최대 만점의 10% 이내에서만 적용**

□ (공통 우대사항)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(중증장애인 포함)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(각 전형별 가점 부여)

구분	가점	세부가점대상	관련법
장애인	만점의 5%	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	만점의 10%	중증장애인	
사회적 배려 대상자	만점의 5%	기초생활 수급자 (본인 또는 자녀)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		한부모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		다문화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		보호대상자(새터민)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
◆ **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**

- “본인”이 **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전 확인하실 것**
-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자녀이거나,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**불합격 처리되는 사례 발생**

□ (주택연금상당 직무관련 가점) 가점요건(①연령, ②경력, ③자격증)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각 전형별 만점의 3% 우대

① 연령		② 경력		③ 자격증(1개 이상)
만55세 이상	&	금융기관 (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) 근무경력 5년 이상	&	국제재무설계사(CFP)
				한국재무설계사(AFPK)
				노후재무설계상담사(AFPA)
				은퇴설계전문가 Master과정(한국금융연수원)
				은퇴설계전문가(ARPS, 한국FP협회)

- * ①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'22.5.9.) 기준,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한함, ③ 접수마감일 기준 **유효한 자격증에 한함(갱신 여부, 기간 만료 여부 등 확인)**

※ **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10. (생략)
11. “**금융기관**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
 - 나. 「은행법」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(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.)
 - 다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라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마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- 바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자(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) 및 증권금융회사
 - 사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- 아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 - 자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 - 차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
 - 카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
 - 타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

- 우대사항은 증빙서류*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, **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**(면접전형 응시 불가)

*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, 7. 제출 서류 참조

- **보훈대상자***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 미적용(단, 동점자 처리 시 우대)
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
7. 제출서류

- ※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(단순 오기,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) 합격을 취소하고,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
- ※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(5.9.)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(접수 마감일 당일 포함)

- 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방법(해당자에 한함)
 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,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)
 - 공통 우대사항 관련 제출서류
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
 - 중증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
 - 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
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
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
 - 가족관계증명서
 -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
 -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 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
 -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
 - 새터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
 - 보훈대상자* :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

* 가점 미적용(단, 동점자 처리 시 우대)

- 주택연금 모집분야 직무가점 관련 제출서류
 - 주민등록초본, 경력(재직)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 직무가점 증빙서류
- 기한 내 서류 미제출(우대대상이 아님에도 우대대상으로 기재한 경우 포함) 시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(이후 전형 응시 불가)
 - ※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
- 기타 증빙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(해당자에 한함)
 -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등 제출 (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)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안내 예정

8. 전형별 선발인원 등

- 서류전형
 -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
 -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*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
- * 불성실 기재자**

 -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
 -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
 -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%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
- 경쟁률 5배수 초과 :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
 - 경쟁률 5배수 이하 : 부적격자(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)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

□ 면접전형

- 인재상 부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
-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(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)를 선발하되, 부적격자(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) 제외
- 서울에서 실시하며, 응시자에게 소정의 교통비 지급

□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·신체조건·학력·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

※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에서 주최하는 「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」에서 2019년 기재부장관상, 2020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함

9. 기타사항

-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&A를 이용(<https://hftop.saramin.co.kr>)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
-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, 당사 「채용세칙」 제35조(피해자 구제방안)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

구 분	피해자 구제 방안
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	-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,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(예비)합격자 지위부여
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	-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,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-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

□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

□ 동점자 처리기준

-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(10% 가점) > 보훈대상자(5% 가점) > 중증장애인 > 장애인 > 사회적 배려 대상자 > 직무가점 대상자(주택연금상담 모집분야에 한함) > 직전 전형단계 성적순*으로 선발
- *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“직무능력” 항목 득점 순
-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

□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지원자격,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
□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*을 확인하며,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

- * 주민등록증(발급신청 확인서 포함), 청소년증(발급신청 확인서 포함)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(학생증, 공무원증, 모바일 신분증 등은 인정불가)

□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